

안양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9. 10. 7 조례 제2227호
일부개정 2017. 11. 16 조례 제2884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관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에스오에스(이하 “기업SOS”라 한다, SOS: Speed One stop Solution)”란 관내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SOS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SOS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처리회의”(이하 “원스톱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기업SOS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업무담당과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기업SOS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둔다.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조(기업SOS지원단) 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업SOS지원단

을 운영한다.

② 기업SOS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지원한다.

제6조(기업애로원스톱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업애로원스톱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기업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이 주재하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6>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하여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유관기관·단체의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와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① 시장은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및 그 소속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확보) 시장은 기업SOS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8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 ④ 「안양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업무담당국장”을 “업무담당 실·국장”로 한다.
-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